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안전관리계획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 결과 반영 》

■ 송기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236호)

2026.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송기헌의원 대표발의(제2215236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안전관리계획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 결과 반영(안 제62조제3항 및 제10항 단서 신설)	2
나. 안 제62조 항 이동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안 제31조·제55조·제60조·제80조·제88조·제91조)	12

I. 송기헌의원 대표발의(제2215236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송기헌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2. 15.

다. 회 부 일 : 2025. 12. 1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착공 전에 안전관리 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발주자는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를 하여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안전관리계획 승인 시 위와 같은 전문기관의 검토 의뢰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검토 의뢰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도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전관리계획 승인 시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미반영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 요청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계획 검토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공사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3항 및 제11항 단서 등).

3. 검토의견

가. 안전관리계획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 결과 반영(안 제62조제3항 및 제10항 단서 신설 등)

개정안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 결과가 안전관리계획에 반영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 ② (생략) <u><신설></u>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이 조에서 “건설안전점검기관”이라 한다)의 검토를 거치고, 그 결과가 안전관리계획에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③·④ (생략)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⑤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승인의 방법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및 안전점검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생략) ⑧ 제7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받은 종합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할 수 있으며, 적정성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으	⑥ ----- --제5항----- ----- -----. ⑦ -----제출·검토·승인----- ----- ----- -----.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⑨ 제8항----- ----- ----- ----- -----. ⑩ ----- -----제8항----제9항----- ----- ----- -----. ⑪ ----- -----제4항----- ----- -----제6항----- ----- ----- ----- -----

현행	개정안
로 하여금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 ----- 다만,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가 안전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⑪ ~ ⑮ (생략)	⑫ ~ ⑲ (현행 제11항부터 제18항까지와 같음)

현행법 제62조¹⁾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제1항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²⁾으로 정하는 건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결과와 적정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할 수 있으며, 적정성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제2항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제10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향타 및 향발기

다. 타워크레인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령 제98조제4항³⁾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이하 “전문기관”이라 함)에 검토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음.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④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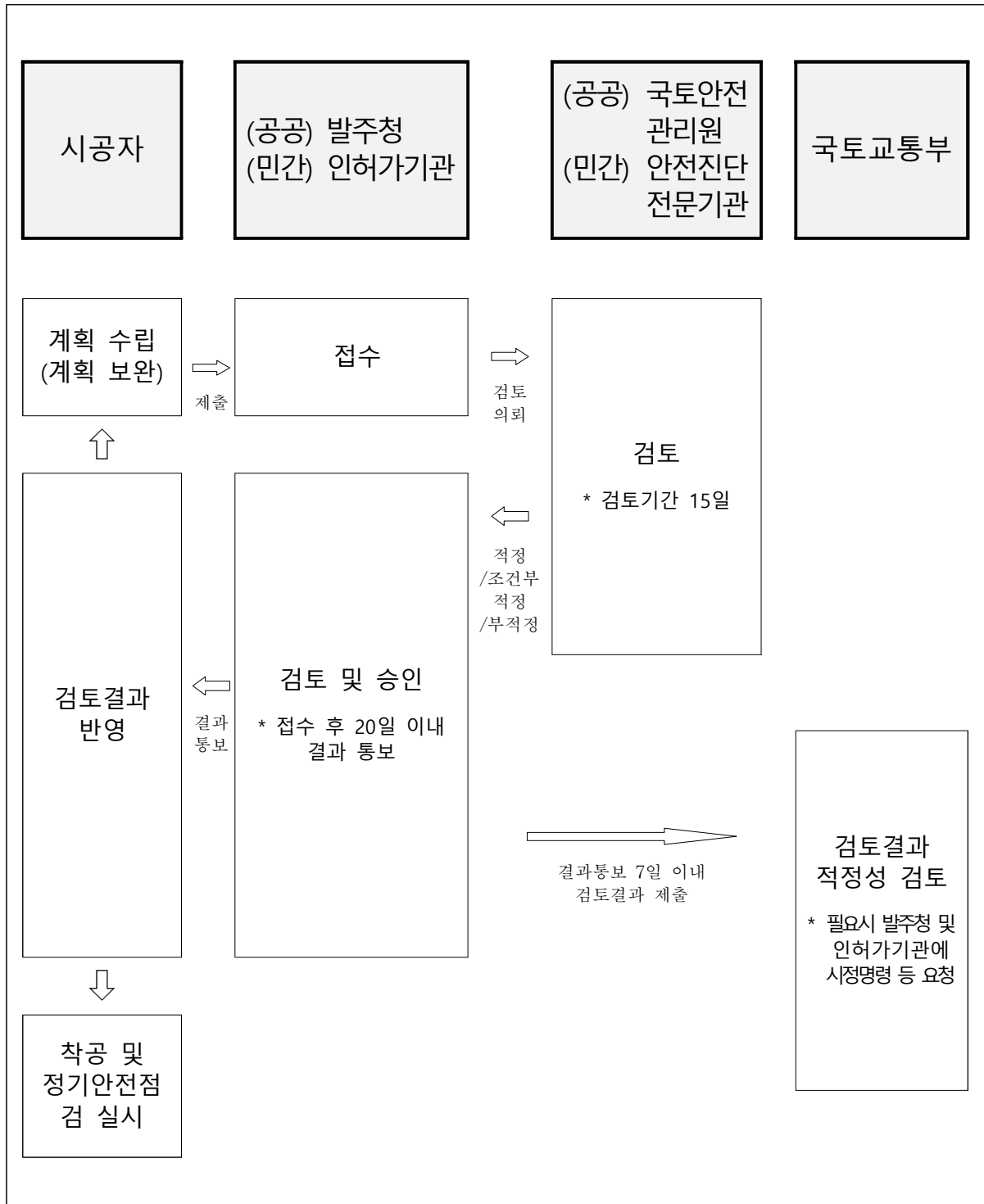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하 “건설안전점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다만, 그 기관이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인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2.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계획 수립 · 제출 · 검토 · 승인 등 절차 】



※자료: 국토교통부

개정안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의 안전관리계획 검토·승인과 관련하여,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전문기관의 검토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그 검토결과가 안전관리계획에 반영되도록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안 제62조 제3항 신설),⁴⁾

국토교통부장관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관련하여, 전문기관의 검토결과가 안전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62조제10항 단서 신설).⁵⁾

전문기관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검토 의뢰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건설공사의 착공을 승인하기 전에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 결과를

4) 개정안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③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이 조에서 “건설안전점검기관”이라 한다)의 검토를 거치고, 그 결과가 안전관리계획에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개정안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 결과의 적정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할 수 있으며, 적정성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가 안전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참고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청의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의 안전관리계획 검토 결과를 예를 들어 살펴보면, 총괄 안전관리계획 및 공종별 세부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⁶⁾의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조건부 적정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함께 기재하고 있는바,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분석된 사항들을 안전관리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시공 과정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⑤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제2호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의견서(표지) 예시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의견서 [신규]		
검 토 현 황	신규검토[✓] 재검토[] 변경검토[]	
공 사 명	임금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설물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종합검토의견	조건부 적정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건	주 요 내 용
Ⅰ 총괄 안전관리계획		
가. 건설공사의 개요	조건부 적정	CSI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 의견서 추가 보완
나. 현장 특성 분석	조건부 적정	현장 여건 분석 보완
다. 현장 운영계획	조건부 적정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관련 보완
라.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적 정	
Ⅱ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가. 가설공사	적 정	
나.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조건부 적정	합동회의 결과 내용 등 보완
다. 콘크리트공사	조건부 적정	알폼·깁폼 구조 안전성 계산서 등 보완
라. 강구조물공사	-	해당사항 없음
마. 성토 및 절토공사	-	해당사항 없음
바. 해체공사	-	해당사항 없음
사. 건축설비공사	조건부 적정	자재·장비 등의 제원 및 시공 상세도면 등 보완
아. 타워크레인 사용공사	조건부 적정	타워 기초 및 브레이싱 구조 안전성 계산서 등 보완
[첨부]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내용		
국토안전관리원장 직인 생략		

※자료: 국토교통부

*주- 첨부되는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내용에는 총괄 안전관리계획 및 공종별 세부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13쪽 분량으로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다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문기관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하여 서류 위주의 검토를 하고⁷⁾ 발주청 등은 전문기관 검토결과의 현장 적용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최종적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의 검토결과를 보완하는 사례들도 있다고 하는데,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과 전문기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그대로 따르게 하는 것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부여된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승인 권한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전문기관의 검토결과를 전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안전관리계획 승인권자의 재량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고, 승인기관의 심도있는 검토 과정이 생략되어 안전관리 체계가 약화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대한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와 유사한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7) 국토교통부는 국토안전관리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단계에서는 서류 위주의 검토를 하게 되고, 추후 지방국토관리청 등과의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된다고 설명함.

나. 안 제62조 항 이동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안 제31조·제55조·제60조·제80조·제88조·제91조)

현행	개정안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생략)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 ----- ----- -----
가. ~ 마. (생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바. ----- ----- -제62조제16항----- ----- -----
사. (생략)	사.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 및 실시대장 등 증빙자료를 열	③ ----- ----- ----- -----

현행	개정안
람이 가능하도록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제80조(시정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제62조제16항----- -----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 ----- ----- ----- ----- ----- ----- ----- 제62조제16항-----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제62조제16항----- -----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80조(시정명령) ----- ----- -----

현행	개정안
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제6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항----- ----- -----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8조(벌칙)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제62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7의2. 제62조제5항----- -----
8. 제62조제11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확인 없이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를 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8. 제62조제12항----- ----- -----
9. 제62조제12항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설구조물이 붕괴되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관계전문가	9. 제62조제13항----- ----- ----- -----
10. (생략)	10. (현행과 같음)
제91조(과태료) ① (생략)	제9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	② ----- -----

현행	개정안
료를 부과한다.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제62조제7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 제62조제8항----- -----
3의2. 제62조제14항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의2. 제62조제15항----- -----
3의3.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62조제19항----- -----
4.5. (생략)	4.5.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1. ~ 13. (생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제62조제3항·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4. 제62조제4항·제6항 및 제9항----- -----
15.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5. 제62조제19항----- -----
16. (생략)	16.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안 제31조·제55조·제60조·제80조·제88조·제91조는 안 제62조에서 제3항을 신설하여 제3항부터 제18항까지가 각각 제4항부터 제19항까지로 이동함에 따라, 이동하는 항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62조의 심사결과에 따라 개정 여부를 정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사항 】

구 분	현행 인용조문	개정안의 인용조문
제31조제2항제7호바목	제62조 <u>제15항</u>	제62조 <u>제16항</u>
제55조제3항	제62조 <u>제15항</u>	제62조 <u>제16항</u>
제60조제1항 및 제3항	제62조 <u>제15항</u>	제62조 <u>제16항</u>
제80조제3호	제62조 <u>제4항</u>	제62조 <u>제5항</u>
제88조제7호의2	제62조 <u>제4항</u>	제62조 <u>제5항</u>
제88조제8호	제62조 <u>제11항</u>	제62조 <u>제12항</u>
제88조제9호	제62조 <u>제12항</u>	제62조 <u>제13항</u>
제91조제2항제3호	제62조 <u>제7항</u>	제62조 <u>제8항</u>
제91조제2항제3호의2	제62조 <u>제14항</u>	제62조 <u>제15항</u>
제91조제2항제3호의3	제62조 <u>제18항</u>	제62조 <u>제19항</u>
제91조제3항제14호	제62조 <u>제3항·제5항 및 제8항</u>	제62조 <u>제4항·제6항 및 제9항</u>
제91조제3항제15호	제62조 <u>제18항</u>	제62조 <u>제19항</u>

문 의 처

02)6788-5591